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688호 2020. 9. 17.(목)

## 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1160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----- 1

## 입법예고

- 사천시 공고 제1139호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2
- 사천시 공고 제1142호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 7
- 사천시 공고 제1143호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33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# 사 천 시 공 보

제 688 호

사천시 공고 제2020-1160호

##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

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「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### □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

면허 번호	어업종류 (어업방법)	어장 위치	면적 (ha)	어 업 시 기	어업면허 유효기간	연장허가 기 간	허가일자 및 번호	어업권자		비고
								주소	성명	
사천 제40호	패류양식 (바닥식)	서포 비토 지선	11.25	연 중	'10.09.27 ~ '20.09.26	'20.09.26 ~ '30.09.26	'20.09.15. 제2020-2호	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876번가길 34, 203호	최을균 외 3명 (윤덕영, 김영 훈, 허윤경)	

2020년 9월 17일

사 천 시 장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사천시 공고 제2020-1139호

「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17일

사 천 시 장

##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예산 지원액 상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예산 지원액 상한 규정 삭제(안 제4조제5호 단서)

나. 올바른 약칭 사용(안 제3조, 제4조제5호 본문)

# 사 천 시 공 보

제 688 호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우주항공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민원/공개> 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 사천시장(참조: 우주항공과장)

[(우)52539 /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사천시청 우주항공과)

전화번호: 055)831-3057, 팩스번호: 055)831-6044]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생 년 월 일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 고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시” 를 “사천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” 로 한다.

제4조제5호 본문 중 “시장” 을 “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” 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#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센터의 설립)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<u>시</u> 관내에 둔다.	제3조(센터의 설립) ----- ----- <u>사천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</u> -----.
제4조(사업)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~ 4. (생략) 5.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<u>시장</u> 이 인정하는 사업. <u>단, 예산(사업비 및 인건비 등)은 3,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.</u>	제4조(사업)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 <u>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</u> ----- . <u>&lt;단서 삭제&gt;</u>

# 사 천 시 공 보

제 688 호

## 사천시 공고 제2020-1142호

「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17일

사 천 시 장

##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어린이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,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(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)

### 2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 신설(안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)

나. 조의 제목 변경 및 도서관 운영시간 신설(안 제15조제3항)

다. 수강료 등의 반환 규정 정비 및 면제 규정 확대(안 제17조, 별표 1, 별표 2 및 별지 제3호서식)

라. 도서관 회원가입 대상 확대 및 절차(안 제19조 및 별지 제2호서식)

마. 도서관 대출 대상 및 대출 기간 확대(안 제20조 및 별표 3)

# 사 천 시 공 보

제 688 호

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평생학습센터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)의 정보공개/민원/행정정보공개/법무행정종합정보/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: 사천시장(참조: 평생학습센터소장)

(우편번호: 52516, 주소: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

전화: 055-831-2960, 팩스: 055-855-8854)

# 사 천 시 공 보

제 688 호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 고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시장”을 “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시”를 “사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사용료”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.
6. “수수료”란 도서관 내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.
7. “수강료”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료 강좌를 신청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49-28”을 “49-30”으로 한다.

제4조제6호를 삭제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휴관일)”을 “(운영시간 및 휴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본문 중 “제1항제3호” 를 “제2항제3호” 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.

제17조제2항 중 “하고,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” 를 “한다.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수탁기관으로 하여금” 을 “수탁기관에서” 로, “수강료” 를 “징수된 수강료” 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수강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강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
3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4.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
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
2.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회원가입)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천시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
2. 사천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
3. 사천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
4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장은 신청자에게 별표 3에 따른 도서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람에 대하여” 를 “사람에게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7일” 을 “14일” 로, “1회” 를 “대출권수는 1회” 로 한다.

1. 제19조에 따른 도서관 회원 또는 책이음 회원

제21조제2항 중 “100분의 3” 을 “100분의 7” 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불가항력의 재해·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도서관의 자료를 유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별표 1부터 별표 3까지,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#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“위탁”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·규칙에 규정된 <u>시장</u>의 사무 중 일부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·단체·공공기관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사무를 맡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4. “수탁자”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<u>시</u>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·공공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4. ----- ----- <u>사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/u>----- -----.</p> <p>5. <u>“사용료”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.</u></p> <p>6. <u>“수수료”란 도서관 내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.</u></p> <p>7. <u>“수강료”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료 강좌를 신청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위치) 도서관은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<u>49-28</u>에 둔다.</p>	<p>제3조(위치) ----- - <u>49-30</u>-----.</p>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능)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<b>6. <u>영어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</u></b></p> <p><b>제15조(휴관일) &lt;신 설&gt;</b>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<u>제1항제3호</u>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<b>제17조(수강료 등) ① (생 략)</b></p> <p>②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면 사용일 또는 개강일 3일 전까지 수강료 등을 납부하여야 <u>하고,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4조(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&lt;삭 제&gt;</b></p> <p><b>제15조(운영시간 및 휴관) 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.</b></p> <p>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제2항제3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b>제17조(수강료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한다.</u></p>

# 사 천 시 공 보

제 688 호

현 행	개 정 안
<p>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은 수강을 신청한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수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수강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강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/p> <p>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</li> <li>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</li> <li>3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</li> <li>4.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</li> <li>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</li> </ol> <p>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</li> <li>2.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</li> </ol>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현 행	개 정 안
<p>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<u>수탁기관으로 하여금</u> 수강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고, <u>수강료</u> 등은 도서관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<u>제19조(회원제) 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<u>회원가입 신청서</u>를 제출하여야 하고, 회원에게는 <u>별표 3</u>의 <u>도서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⑥ ----- ----- <u>수탁기관에서</u> ----- ----- <u>징수된 수강료</u> -----.</p> <p><u>제19조(회원가입)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사천시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</u></li> <li><u>2. 사천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</u></li> <li><u>3. 사천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</u></li> <li><u>4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li> </ol> <p>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<u>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</u> 이 경우 관장은 신청자에게 <u>별표 3에 따른 도서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</u></p>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현 행	개 정 안
<p>③ <u>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1. <u>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</u></p> <p>2. <u>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자의 자녀</u></p> <p>제20조(대출)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사람에 대하여</u> 자료를 대출해 줄 수 있다.</p> <p>1. <u>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책이음회원 중 14세 미만의 어린이</u>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<u>7일</u> 이내로 하고, <u>1회</u> 5권 이내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21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) ① (생략)</p> <p>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<u>100분의 3</u> 이내로 한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제20조(대출) ① ----- ----- <u>사람에게</u> ----- -----.</p> <p>1. <u>제19조에 따른 도서관 회원 또는 책이음 회원</u>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14일</u> ----- <u>대출권수는 1회</u>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1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100분의 7</u> ----- - <u>다만, 불가항력의 재해·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도서관의 자료를 유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<현 행>

[별표 1]

## 수강료 등(제17조제1항 관련)

### 1. 시설사용료

구 분	기 준	금 액
배 음 실	1회 3시간 기준	20,000원

○ 기본 사용시간(3시간)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의 10%를 가산적용

### 2. 자료복사 및 인쇄

구 분	규 격	금액(1면당)	비 고
복 사 (전자복사기)	B5	20원	
	A4	30원	
	B4	40원	
	A3	50원	
인 쇄 (프린터기)	A4	30원	
	B4	40원	
	A3	50원	

### 3. 회원증 발급

구 분	금 액	기 준	비 고
회원증	무료	1회 1매	신규, 재발급

### 4. 프로그램 수강료

단 위	수 강 시 간	금 액(원)	비 고
월	4시간 이하 프로그램 (초급)	10,000	◦1인 1프로그램
	4시간 이하 프로그램 (중급)	30,000	◦실습재료비, 교재비는 본인 부담
	8시간 이하 프로그램	60,000	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<개정안>

[별표 1]

## 수강료 등(제17조제1항 관련)

### 1. 시설사용료

구 분	기 준	금 액
배 음 실	1회 3시간 기준	20,000원

○ 기본 사용시간(3시간)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의 10%를 가산적용

### 2. 자료복사 및 인쇄

구 분	규 격	금액(1면당)	비 고
복 사 (전자복사기)	A4	30원	
	A3	50원	
인 쇄 (프린터기)	A4	30원	
	A3	50원	

### 3. 회원증 발급

구 분	금 액	기 준	비 고
회원증	무료	1회 1매	신규, 재발급

### 4. 프로그램 수강료

구 분	금 액(원)	비 고
개별 영어강좌 (강습, 교육)	월 10,000원	◦주1회 기준 ◦재료비, 교재비는 본인 부담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<현 행>

【별표 2】

## 수강료 반환 기준 (제17조제2항 관련)

구 분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	비 고
학습자 본인의 요 청	1) 사용 또는 개강 전일	<u>전액 환불</u>	
	2)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1/3 경과 전	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70%	
	3)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1/2 경과 전	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50%	
	4)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2/3 경과 전	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30%	
	5) 사용 또는 학습시간의 2/3 경과 후	반환하지 아니함	
외부 요인	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거나 시설 사용이 불가할 때	<u>전액 환불</u>	
구비 서류	<u>1) 주민등록증</u> <u>2) 본인명의로의 통장 사본</u> <u>3) 수강료 납부 영수증</u>		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<개정안>

【별표 2】

## 수강료 등의 반환 기준 (제17조제3항 관련)

구 분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	비 고
학습자 본인의 요 청	1) 사용 또는 개강 전일	<u>전 액 반 환</u>	
	2)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1/3 경과 전	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70%	
	3)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1/2 경과 전	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50%	
	4) 사용 또는 학습기간의 2/3 경과 전	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30%	
	5) 사용 또는 학습시간의 2/3 경과 후	반환하지 아니함	
외부 요인	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거나 시설 사용이 불가할 때	<u>수강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</u>	
구비 서류	<u>1) 신분증</u>		

# 사 천 시 공 보

제 688 호

< 현 행 >

【 별 표 3 】

## 도서회원증(제 19 조 제 2 항 관련)

도서회원증	
사진	성 명 :
	회원번호 :
년 월 일	
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장	

# 사 천 시 공 보

제 688 호

<개정안>

【별표 3】

## 도서회원증(제19조제2항 관련)

(앞 면)

### 도서회원증

이 름 :

회원번호 :

사천시어린이도서관

사천시통합도서관

(뒷 면)

### 도서관 이용안내

- 도서관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.
- 대출기간: 14일 이내
- 대출권수: 1회 5권 이내
- 본 카드를 습득하신 분은 도서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도서관별 전화번호

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## <개정안>

[별지 제2호서식]

###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(제19조제2항 관련)

(앞면)

성 명		생년월일		성 별	
주 소				휴대전화	
학교명	사천시민이 아닌 경우 작성			집전화번호	
직장명	사천시민이 아닌 경우 작성				

\* 본인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함에 있어서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, 특히 자료의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.

\* 사천시 도서관 회원통합에 따라 사천시어린이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면 하나의 회원증으로 사천시 통합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- 사천시통합도서관
1. 사천시어린이도서관
  2. 시민문화센터 작은도서관
  3.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

\* 뒷면의 사천시어린이도서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동의 시에만 가입 가능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## 사천시장 귀하

###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

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.

법정대리인: (서명 또는 인)

# 사 천 시 공 보

제 688 호

(뒷면)

##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###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

#### 1.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

사천시어린이도서관(사천시 통합도서관)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 ·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- 도서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, 개인 식별
- 회원증 발급 및 도서관 시설, 자료 이용 및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
- 반납예정일 안내, 연체도서 독촉, 도서관 프로그램 관련 안내사항 전달 등 정보제공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.       동의하지 않습니다.

#### 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
가. 필수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(휴대전화, 자택), 성별, 아이디, 비밀번호, 법정대리인(보호자) 성명, 연락처 등

나. 선택항목 : 학교·직장명, 근무지

다. 사용 중 생성 항목 : 대출자번호, 관리구분, 소속코드, 직급코드, 통합회원 여부, 회원구분, 가입도서관, 우편발송지역, 회원상태, 등록일자, 수정일자, 제적일자, 대출정지일, 대출정지회원사유, 회원증분실여부, 회원증발급횟수, 현재 대출권수, 현재연체권수, 누적연체횟수, 누적연체일 등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.       동의하지 않습니다.

####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
가. 보존근거 : 정보주체의 동의      나. 보존기간 : 가입 시 ~ 탈퇴 시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.       동의하지 않습니다.

#### 4.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

「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」을 통한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에 동의합니다.       동의하지 않습니다.

※ 개인정보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: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거부 시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<현 행>

[별지 제3호서식]

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5일
신 청 인	성 명		생년월일	남, 여
	주 소			
	전화번호	(휴대전화)		
취소 사유				
환불 신청액	금	원정(금 )		
입금계좌번호		( )은행	예금주	
<p>「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」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장 귀하</p>				
첨부서류	신청인 제출서류			수수료
	주민등록증, 통장사본, 수강료 납부영수증			없음

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## 관 련 법 규

### □ 도서관법

제5조(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)

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 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8조(업무)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,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도서관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
2.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3.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
4. 강연회, 전시회, 독서회,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
5.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
6.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
7.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

제33조(사용료 등)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.

### □ 도서관법 시행령

제3조(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)

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1의2와 같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## [별표 1의2]

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(제3조제2항 관련)

### 1.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

- 가.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
- 나.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
- 다.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

### 2.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

- 가.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
- 나. 훼손, 파손 또는 오손
- 다. 불가항력의 재해·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휴실
- 라.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(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제4호에서 같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
### 3.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###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.

제19조(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)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
- 2. 개인연구실·회의실 등 사용료
- 3. 회원증 발급 수수료
- 4. 강습·교육 수수료
- 5. 도서관 입장료(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)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##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## 사천시 공고 제2020-1143호

「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17일

사 천 시 장

##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감사원 대행감사 “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” 권고사항 반영을 통한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의무부과 규정 정비(안 제7조제1항 및 안 제15조)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# 사 천 시 공 보

제 688 호

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평생학습센터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)의 정보공개/민원/행정정보공개/법무행정종합정보/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: 사천시장(참조: 평생학습센터소장)

(우편번호: 52516, 주소: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

전화: 055-831-2960, 팩스: 055-855-8854)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 고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자를” 을 “사람을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5호 중 “지역주민들” 을 “지역주민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주민들” 을 “지역주민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 1명과 5명 이내의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.

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(일요일은 제외한다). 다만,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휴관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회원가입 신청서” 를 “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” 로, “하고, 회원에게는” 을 “한다. 이 경우 관장은 신청자에게” 로, “회원증” 을 “도서회원증” 으로 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제12조제1항 중 “사람에게는” 을 “사람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1회” 를 “대출권수는 1회” 로 한다.

제15조 중 “모든 작은도서관” 을 “작은도서관” 으로, “위해서” 를 “위하여” 로, “설치하여야 한다” 를 “둘 수 있다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#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“관장”이란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·반납·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<u>자</u>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 <u>사람을</u> ----.</p>
<p>제3조(작은도서관의 기능)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</u></p>	<p>제3조(작은도서관의 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지역주민</u>----- -----</p>
<p>제4조(공간과 위치) ① 작은도서관은 <u>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</u>하여야 하며 특히,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공간과 위치) ① ----- <u>지역주민</u>----- ----- ----- 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관리 인력) ① <u>작은도서관은 관장 1명과 자원봉사자 5명 이상을 확보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7조(관리 인력) ① <u>작은도서관에는 관장 1명과 5명 이내의 자원봉사자를</u> 둘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휴관)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「<u>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</u>」이 정하는 공휴일(일요일 제외) 단,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관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10조(휴관) ----- -----.</p> <p>1. 「<u>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</u>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(일요일은 제외한다). 다만,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휴관한다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회원제) ① (생략)</p> <p>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<u>회원가입 신청서</u>를 제출하여야 <u>하고, 회원에게는 별표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1조(회원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</u>----- <u>한다. 이 경우 관장은 신청자에게 ----- 도서관회원증</u> -----.</p>
<p>제12조(자료대출) ① 회원으로 등록된 <u>사람에게는</u>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.</p> <p>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, <u>1회</u> 3권 이내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자료대출) ① ----- <u>사람은</u>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대출권수는 1회</u> ----- -----.</p>
<p>제15조(운영위원회 설치) <u>모든 작은도서관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5조(운영위원회 설치) <u>작은도서관----- ----- 위하여</u> ----- <u>둘 수 있다.</u></p>

# 사 천 시 공 보

제688호

## 관 련 법 규

### □ 작은도서관 진흥법

제6조(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)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작은도서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,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.